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2453
------------	------

2025년 2월 27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나. 제출일자 : 2025년 2월 3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2월 6일

라. 상정일자

○ 제328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2025년 2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통실장 여장권)

가. 제안이유

- 공무수행 차량의 주차요금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학교시설의 주차특성을 반영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변경하며, 그 밖에 상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주차장 확보 노력의무가 시장에게 있는 것으로 수정(안 제2조)
- 공익목적에 위한 공무수행차량의 주차요금 면제 근거 규정 신설(안 제7조제1항제15호 신설)
- 학교시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그 밖의 건축물’ 적용 대상시설 중 학교시설을 따로 분류하여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200㎡당 1대에서 250㎡당 1대로 변경(안 별표 2의 제10호)
 - ‘그 밖의 건축물’ 대상시설 중 ‘대학생기숙사’를 ‘학생용기숙사’로 변경(안 별표 2의 제10호 및 비고 제10호)
- 상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개정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 외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설치비율을 조례에 신설(안 별표 2 비고 제11호 신설)
 -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반영(안 별표 3 비고 제4호)
- 기타 자구 수정 및 상위법령 인용조문 현행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4. 10. 24. ~ 11. 13.)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의 주차장 확보 노력의무, 공익목적 공무수행차량의 주차요금 면제 근거 신설, 학교시설 등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적용하는 한편 기타 자구 수정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등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주차장 확보 노력의무 관련(안 제2조)

- 동 개정조례안 제2조는 현행 조례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가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24년 12월 서울시 법무담당관 법제심사 결과¹⁾에 따라 주차장 확보 의무가 시장에게 있는 것으로 수정하면서 시민의 명시적 노력 의무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이는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

1) 법제심사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법무담당관-18656호, '24.12.2.)

치법」 제28조제1항2)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현행 「주차장법령」에 주민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³⁾」에서 자치법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언적인 내용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조례와 같이 자동차 소유자의 주차장 확보 노력의무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임

■ 주차요금의 감면 등(안 제7조)

-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규정(제7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을 삭제하는 한편 긴급차량 등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규정(안 제7조제1항제15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먼저 할인규정 삭제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결제시 100분의 10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행 조례 부칙에 따라 각

2)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3)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101

6. 시장 등의 책무·책임 등에 관한 규정

나. 규정의 위치 및 표현방식 :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나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 부과가 아니라 “... 노력해야 한다”는 식의 선언적인 내용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각 '20년 12월 31일⁴⁾과 '21년 6월 30일⁵⁾에 종료되어 조문의
실효성이 상실되었는 바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삭제하는 것이 적절
할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주차요금 면제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동 개정조례안 제7
조제1항제15호나목의 '공무수행 차량'의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는
“「주차장법」과 현행 조례의 근거없이 내부방침⁶⁾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무수행 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
하는 것에 대해 감사위원회 등의 지적사항을⁷⁾ 반영하여 면제 근
거를 마련한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가목의 '긴급자동차'에 대한 면제 규정 신설의 경우 「도로교
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가 공무수행 중 공영주차장
을 이용하는 경우 요금을 면제하는 것은 이해되나
긴급자동차의 종류가 다양하고[별첨 참고], 긴급자동차가 공무수
행중이 아니더라도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일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 이후 면제기준 남용방지를 위한

4) 부칙 <제7113호, 2019.5.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7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5) 부칙 <제7634호, 2020.7.16.>

제2조(바로녹색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7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6) '24년 1월 공개된 '서울시 감사위원회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 기관운영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
울시(주차계획과)는 '14년 3월 공단에 공문을 통해 '향후 본청,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공영주차장에 대
한 사용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공단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통보하
였고, 공단은 자체규정 마련을 통해 공무수행 차량에 대해 면제를 시행

7) 조치할 사항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주차계획과)장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공용차량, 행사차량 등
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필요성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관련 조항의 개정 방안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⁸⁾에서는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대상 선정시 지자체장에게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어 특정 신분 공직자 등에게 주차요금 상시 면제 근거로 오·남용될 수 있는 포괄규정⁹⁾은 삭제하되, 이로 인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조례·규칙에 별도의 구체적인 면제규정을 마련”토록 하였음에도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면제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서울시는 '20년 5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69)¹⁰⁾을 제출하여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제23조의2 관련) 중 “그 밖에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과 같은 포괄규정을 삭제한 바 있음

■ 학교 기숙사 및 학교시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관련(안 별 표2 비고 제10호)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¹¹⁾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화하여 설

8)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19.9.24.) : 지방자치단체 관리·운영 주차장, 공직자등의 주차료 상시 면제 없어진다.

9) (예시) 기타 관리자가 인정하는 자동차,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0)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69)

- 제안일 '20.5.25, 회부일 '20.5.29, 상임위 심사일 '20.6.17

※ 세 건(제1491호, 제1518호, 제1569호)을 병합 심사하여 하나의 대안(제1627호)으로 제안

치기준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고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조례안 ‘별표 2 제10호 설치기준란과 비교 제10호’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교 기숙사 및 초·중·고·대학교 학교시설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 학교 종류별 기숙사 등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현황

구 분	법령기준	현행조례	개정안	비고
초등학교 기숙사	400㎡당 1대	200㎡당 1대	400㎡당 1대	규정완화 (상위법령과 동일)
중학교 기숙사				
고등학교 기숙사				
대학교 기숙사		좌동	좌동	변화없음
초·중·고·대학교 학교시설	300㎡당 1대	200㎡당 1대	250㎡당 1대	규정완화

- 이는 서울시가 '24년 7월 대학혁신 실현을 위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위해 “대학 도시계획 혁신 2.0”¹²⁾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일환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추진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초·중·고교 기숙사의 경우 대학교 기숙사와 달리 부설주차장 설치에

1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2) 「대학과 함께하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계획」 대학 도시계획 혁신 20. 추진(시설계획과-6651호, 2024.7.1., 행정2부시장 제171호)

- 시 주차장 조례 개정추진 : (현행) 200㎡당 1대 → (개정안) 250㎡당 1대

대한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학교 기숙사 및 학교시설은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므로 기타 다른 건축물에 비해 주차수요가 낮고, 학교내 주차수요는 주차장 이용 출입제한 등의 정책으로 관리가 가능하여 학교 종류에 따라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달리 적용함에 따른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학교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서울특별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의 상대적 차이¹³⁾를 고려하여 “200㎡당 1대”에서 “250㎡당 1대”로 완화하였으나 교통유발계수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임

■ 상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관련(안 별표 2 비고 제11호 및 별표 3)

- 동 개정조례안 별표 2 비고 제11호는 「주택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개정사항('24년 4월)을 반영하여 ‘도시형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¹⁴⁾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에 사용되는 주차장을 제외하고

13)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표2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반영

- 교육연구시설 유발계수(0.9)는 그 밖의 시설물 유발계수(1.2) 대비 25% 낮음

- 학교시설 설치기준 25% 완화적용 : 1대 / (200㎡×1.25) = 1대 / 250㎡

1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

설치하는 주차구획을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의 경우 등”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비율의 최고한도로 설치토록 하는 것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24.4.16.)

기 존	변 경
제27조(주차장) 〈신설〉	<p>제27조(주차장)</p> <p>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산정할 때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일부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설치한 주차단위구획 수의 3.5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에 해당하는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차단위구획 총수 중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용도가 아닌 주차단위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해당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설치 비율을 정할 수 있다.</p> <p>1.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40 이내</p> <p>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70 이내</p>

- 이는 관련 규정에서 조례로 해당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설치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부설주차장이 승용차공동이용에 전부 사용될 경우 오히려 해당 시설의 주차난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임
- 동 개정조례안 별표 3 비고 제4호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차장 지목에 해당하는 부지의 경우에만 소

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승용차공동이용 지원

유권을 취득하여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하도록 하던 사항을 지목에 관계없이 부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¹⁵⁾을 반영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으나 동 개정이 2016년 7월에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관련 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임

※ [별첨] 도로교통법 상 긴급자동차의 종류

구 분	세부사항
도로교통법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p> <p>가. 소방차</p> <p>나. 구급차</p> <p>다. 혈액 공급차량</p> <p>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p>
도로교통법 시행령	<p>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p>

15) 주차장법 시행령[시행 2016. 7. 20.] [대통령령 제27359호, 2016. 7. 19., 일부개정]

○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별표 1 비고 제3호)

-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차장 지목에 해당하는 부지의 경우에만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하도록 하던 것을, 주차장이 설치 가능하면 지목에 관계없이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구 분	세부사항
	<p>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p> <p>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p> <p>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p> <p>가.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p> <p>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p> <p>다. 보호관찰소</p> <p>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p> <p>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p> <p>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p> <p>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p> <p>9.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p> <p>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p> <p>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p> <p>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p> <p>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p> <p>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p> <p>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p>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수정이유

-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의 주차장 확보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공익 목적 공무수행차량의 주차요금 면제 근거를 신설하며, 학교시설 등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관련 법령 개정사항 적용 및 기타 자구 수정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등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민의 자기 차고 확보 노력을 명기하고, 공영주차장 요금면제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세분화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민의 자기 차고 확보 노력을 명기하고, 공영주차장 요금면제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세분화하도록 변경함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453
----------	---------

제안년월일 : 2025년 2월 27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1. 수정이유

-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의 주차장 확보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공익 목적 공무수행차량의 주차요금 면제 근거를 신설하며, 학교시설 등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관련 법령 개정사항 적용 및 기타 자구 수정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등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민의 자기 차고 확보 노력을 명기하고, 공영주차장 요금면제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세분화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민의 자기 차고 확보 노력을 명기
- 공영주차장 요금면제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세분화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무수행 자동차

다.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등 공익목적을 위해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조례안	수정안(위원회안)
<p>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제4조의2(주차장 설치 지원) 시장은 구청장이 <u>서울특별시</u> 투자사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동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4조의2(주차장 설치 지원) ----- ----- <u>서울특별시(이하</u> <u>“시”라 한다)</u>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4조의2(주차장 설치 지원) (개정안과 같음)</p>
<p>1. ~ 3. (생략)</p> <p>제5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 등) ① (생략)</p> <p>② 영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제21조제1항제1호의 해당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로 한다.다만, 기존에 허용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과 유통근대화계획으로 지정된 전통시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5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 ----- ----- ----- -----한다. 다만,-----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5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시간측정계기 또는 바로녹색결제시스템으로 각 호의 자격이 확인이 되는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p>	<p>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 ----- ----- ----- -----</p>	<p>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 ----- ----- ----- -----</p>

현행	개정조례안	수정안(위원회안)
<p>수 있다.</p> <p>1. ~ 4. (생략)</p> <p>5.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u>서울특별시</u>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p> <p>6. ~ 7의2. (생략)</p> <p>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u>상권 활성화구역</u>(이하 “<u>전통시장 등</u>”이라 한다)에서 구매한 영수증 제시 또는 구매한 사실이 주차시간측정계를 통해 확인된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p> <p>9. · 10. (생략)</p> <p>11. <u>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u>(<u>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u>)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u>시장</u> ----- ----- ----- ----- -----.</p> <p>6. ~ 7의2. (현행과 같음)</p> <p>8. ----- ----- -----<u>상권</u> <u>활성화구역</u>----- ----- ----- ----- ----- ----- -----.</p> <p>9. · 10. (현행과 같음)</p> <p><삭제></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개정안과 같음)</p> <p>6. ~ 7의2. (현행과 같음)</p> <p>8. (개정안과 같음)</p> <p>9. · 10. (현행과 같음)</p> <p>11.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조례안	수정안(위원회안)
<p>해당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p> <p>12. <u>바로녹색결제시스템(사전에 주차요금 납부 가능한 결제수단을 등록하여 주차요금을 자동 납부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u></p> <p>13. 14. (생략)</p> <p><신설></p> <p>②·③ (생략)</p> <p>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p> <p>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p>	<p><삭제></p> <p>13. 14. (현행과 같음)</p> <p>15.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u></p> <p>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p> <p>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무수행 자동차</p> <p>다. 공익목적에 위해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p> <p>① -----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p>	<p>12. (개정안과 같음)</p> <p>13. 14. (현행과 같음)</p> <p>15. ----- ----- -----.</p> <p>가. (개정안과 같음)</p> <p>나. (개정안과 같음)</p> <p>다. <u>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등 공익목적에 위해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p> <p>① -----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조례안	수정안(위원회안)
<p>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p> <p>3. ~ 5. (생략)</p> <p>②·③ (생략)</p> <p>제12조(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 관리수탁자는 제13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제14조의2(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 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구획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승차정원이 16인 이상인 승합자동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9조(주차장의 표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하되, 그 표지 상단에 서울특별시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제25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p>	<p>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p> <p>3. ~ 5.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 ----- 제13조제1항제1호----- -----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4조의2(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 ① -----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 ----- -----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9조(주차장의 표지) ----- ----- ----- ----- ----- ----- ----- -----</p> <p>제25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p>	<p>3. ~ 5.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4조의2(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9조(주차장의 표지) (개정안과 같음)</p> <p>제25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조례안	수정안(위원회안)
<p>「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에 관한 법률」 제17조----- ----- ----- ----- -----한다. 다 만,----- -----.</p>	
<p>②·③ (생략)</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5조의2(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p>	<p>제25조의2(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p>	<p>제25조의2(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p>
<p>① ~ ④ (생략)</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도3에 따른다.</p>	<p>⑤ ----- ---- 별도 3-----.</p>	<p>⑤ (개정안과 같음)</p>
<p>제25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으로 한다.</p>	<p>제25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 ----- ----- ----- ----- ----- ----- ----- -----.</p>	<p>제25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별도 제4호 서식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p>	<p>② ----- ---- 별도 제4호서식----- ----- -----.</p>	<p>② (개정안과 같음)</p>
<p>제30조(과태료 부과·징수 등)</p>	<p>제30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p>	<p>제30조(과태료 부과·징수 등)</p>
<p>① 제22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시설물 소유자 또는 시설물관리사업자에게는 「도</p>	<p>----- ----- ----- 「도</p>	<p>①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조례안	수정안(위원회안)												
<p>시교통정비촉진법」 제60조 제1항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생략)</p> <p>[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175 739 558 1041"> <thead> <tr> <th>시설물</th> <th>설치기준</th> </tr> </thead> <tbody> <tr> <td>10. 그 밖의 건축물</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 ○ <신설> ○ 대학생기숙사를 제외한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 당 1대 </td> </tr> </tbody> </table> <p><비고> 10. ‘대학생기숙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주거를 위해 대학,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건립하는 시설을 말한다.</p> <p><신설></p>	시설물	설치기준	10. 그 밖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 ○ <신설> ○ 대학생기숙사를 제외한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 당 1대 	<p>시교통정비촉진법」 제60조제1항제6호-----</p> <p>② (현행과 같음)</p> <p>[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590 739 989 1041"> <thead> <tr> <th>시설물</th> <th>설치기준</th> </tr> </thead> <tbody> <tr> <td>10. 그 밖의 건축물</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용기숙사: ----- ○ 학교시설: 시설면적 250㎡당 1대 ○ 학생용기숙사, 학교시설을 --: ----- </td> </tr> </tbody> </table> <p><비고> 10.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학생용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p> <p>1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일부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용도가 아닌 주차단위구획을 다음 각 목의</p>	시설물	설치기준	10. 그 밖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용기숙사: ----- ○ 학교시설: 시설면적 250㎡당 1대 ○ 학생용기숙사, 학교시설을 --: ----- 	<p>② (현행과 같음)</p> <p>[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1029 739 1420 1041"> <thead> <tr> <th>시설물</th> <th>설치기준</th> </tr> </thead> <tbody> <tr> <td>10. 그 밖의 건축물</td> <td>(개정안과 같음)</td> </tr> </tbody> </table> <p><비고> 10. (개정안과 같음)</p> <p>11. (개정안과 같음)</p>	시설물	설치기준	10. 그 밖의 건축물	(개정안과 같음)
시설물	설치기준													
10. 그 밖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 ○ <신설> ○ 대학생기숙사를 제외한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 당 1대 													
시설물	설치기준													
10. 그 밖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용기숙사: ----- ○ 학교시설: 시설면적 250㎡당 1대 ○ 학생용기숙사, 학교시설을 --: ----- 													
시설물	설치기준													
10. 그 밖의 건축물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조례안	수정안(위원회안)
<p>[별표 3]</p> <p>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p> <p><비고></p> <p>4.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u>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지목에 한한다)</u>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장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p>	<p><u>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u></p> <p>가. <u>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40</u></p> <p>나. <u>가목 외의 도시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70</u></p> <p>[별표 3]</p> <p>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p> <p><비고></p> <p>4 . ----- ----- ----- <u>부지</u> ----- ----- ----- ----- ----- ----- ----- ----- ----- -----.</p>	<p>[별표 3]</p> <p>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p> <p><비고></p> <p>4. (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주차장 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를 “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영 제1조의2제3항”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으로 하고, “한다. 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무수행 자동차
- 다.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등 공익목적을 위해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10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3조제1항 제1호”를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전단 중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를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제19조 중 “서울특별시”를 “시”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하고,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25조의2제5항 중 “별도3”을 “별도 3”으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 중 “법 제6조제1항”을 “법 제6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도 제4호 서식”을 “별도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60조제1항제4호”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60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 (제20조 제1항 관련)”을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20조 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2 제10호 설치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용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 학교시설 : 시설면적 250㎡당 1대○ 학생용기숙사, 학교시설을 제외한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 당 1대 |
|---|

별표 2 비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학생용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1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일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용도가 아닌 주차단위구획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가.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40

나. 가목 외의 도시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70

별표 3 비고 제4호 본문 중 “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지목에 한한다)”를 “부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4조의2(주차장 설치 지원) 시장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동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5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 등) ① (생략)

② 영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제21조제1항제1호의 해당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로 한다.다만, 기존에 허용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과 유통근대화계획으로 지정된 전통시장에는 적용하

사) ----- 법 제3조제2항 -----

-----.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주차장 설치 지원) -----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

-----한다. 다만,-----

지 아니한다.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시간측정계기 또는 바로녹색결제시스템으로 각 호의 자격이 확인이 되는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1. ~ 4. (생략)
5.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6. ~ 7의2. (생략)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상권활성화 구역(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에서 구매한 영수증 제시 또는 구매한 사실이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해 확인된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

-----.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
----- 시장 -----

-----.
6. ~ 7의2. (현행과 같음)
8. -----

----- 상권활성화 구역 -----

-----.

는 경우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9.·10. (생략)

1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2. 바로녹색결제시스템(사전에 주차요금 납부 가능한 결제수단을 등록하여 주차요금을 자동 납부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3.·14. (생략)

<신설>

-----.

9.·10.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13.·14. (현행과 같음)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②·③ (생략)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 5. (생략)

②·③ (생략)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

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무수행 자동차

다.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주관행사, 공영주차

장 시설관리 등 공익목적

을 위해 시장이 특별한 사

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동차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 관리수탁자는 제13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4조의2(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 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노상 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구획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승차정원이 16인 이상인 승합자동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9조(주차장의 표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하되, 그 표지상단에 서울특별시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장애인·노인

제12조(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 ----- 제13조제1항 제1호-----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 ① -----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주차장의 표지) -----

----- 시 -----
-----.

제25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장애인·노인

구획은 별도 제4호 서식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
 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30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제22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시설물 소유자 또는 시설물관리
 사업자에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략)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치기준
10. 그 밖의 건축물	○ 대학생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 ○ <신 설> ○ 대학생기숙사를 제외한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 당 1대

<비고>

10. ‘대학생기숙사’는 「고등교육
 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학
 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주거를
 위해 대학, 정부기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건립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 설>

---- 별도 제4호서식-----

 -----.

제30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 「도시교통정비촉
 진법」 제60조제1항제6호-----

 -----.

② (현행과 같음)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치기준
10. 그 밖의 건축물	○ 학생용기숙사: ----- ○ 학교시설: 시설면적 250㎡당 1대 ○ 학생용기숙사, 학교시설을 -----: -----

<비고>

10.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
 한다.

1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일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용도가 아닌 주차단위구획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가.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40

나. 가목 외의 도시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70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

<비고>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

<비고>

4.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지목에 한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

----- 부지

-----.